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44회 임시회(2020. 10. 27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복지도시위원회

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20-142
----------	--------

2020. 10. 27.
전문위원 신준호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안 자 : 권영숙 의원 외 5 인
- 나. 제 안 일 : 2020. 10. 20.
- 다. 회 부 일 : 2020. 10. 20.

2. 제안이유

최근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해 매년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폭염으로 인한 피해예방과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구민들을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~안 제2조)
- 나. 폭염저감시설의 종류 (안 제3조)
- 다.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(안 제4조~안 제5조)
- 라. 폭염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~안 제7조)
- 마. 무더위쉼터 운영·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)
- 바. 폭염취약계층 지원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)
- 사.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10조)
- 아. 협력체계 구축 및 폭염 피해 예방 교육·홍보 등에 관한 사항
(안 제11조~안 제12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- 2) 「자연재해대책법」

나. 예산조치 : 협의

다. 기타

- 1) 입법예고 : 2020. 10. 15.~ 10. 20.(의견 없음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제정 배경

- 본 제정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및 기상이변에 따라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여 폭염으로부터 마포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음.

나. 주요 조문 검토

- 조례의 구조적 체계는 본칙 13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“폭염” 과 “폭염특보” 등의 용어를 기상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상용어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일하게 적용함.
- 안 제3조 폭염저감시설의 종류는 검증 가능한 시설들로 규정하여 효과성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구민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‘폭염대비 종합계획’을 수립하여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,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등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음.

- 안 제8조는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폭염취약계층에게 각종 냉방물품을 지원하고 밀착 보호관리를 위한 통장, 지역자율방재단원 등 가용 가능한 인원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방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계	생활지원사	밀반찬·도시락 배달봉사자	서울재가관리사	방문간호사
349명	110명	204명	3명	32명

<표 1. 재난도우미 활용 인력 현황>

다. 종합 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매년 거듭되는 기록적인 ‘폭염’의 발생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함에도 그동안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자연재난으로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이 있어
- 행정안전부에서는 2018년 9월 18일 법령의 개정을 통해 ‘폭염’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관리될 수 있도록 반영하였음.
- 금번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의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폭염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.
- 참고로 지난 2018년도에는 1973년 이후 이례적인 폭염이 발생하여 서울의 일 최고기온이 39.6℃의 최고 높은 기온을 보였으며, 이로 인해 온열질환 신고환자수가 4,526명으로 역대 최다로 발생하였음.

※ 폭염일수(일 최고기온 33℃ 이상) 31.4일(평년 9.8일)

※ 열대야일수(밤(18:01~익일09:00) 최저기온이 25℃이상) 17.7일(평년 5.1일)

[관 계 법 령]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재난"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**폭염**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(국민의 책무)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,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·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「자연재해대책법」

제3조(책무)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,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3.21.>

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(이하 "재난관리책임기관"이라 한다)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0.22, 2017.10.24>

<중략>

6.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

- 가.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
- 나. 재해정보 관리·전달 체계 구축
- 다.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
- 라. 비상대처계획 수립

7.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, 점검 방법, 점검 결과의 기록·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시장[특별자치시장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(이하 "행정시장"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]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, 주민 교육·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

⑥ 국민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·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,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·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